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및 기술 혁신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인정 기간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3. 주요내용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기간 축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국제건축가협회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또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축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8. ~ 2024. 1. 1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최근 10년간**”을 “**최근 5년간**”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를 “**최근 5년간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같은 항 제3호 중 “**최근 10년간**”을 “**최근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동법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건축사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 ----- ----- ----- ----- -.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최근 5년간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문화경관과	
연 락 처	(044) 201-3778